

보도시점 2025. 10. 2.(목) 10:00 / 배포 2025. 10. 2.(목) 08:3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의무 이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구체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이하 ‘의료생협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결산 보고서 등을 경영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 개정('25.4.1.)됨에 따라 의료생협 등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공시 사항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 생협법 주요내용 및 하위법령 위임사항 >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 개정규정
경영공시 의무 (제48조의2)	(제1항) 의료생협의 경영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	시행령 제10조의4 제1항 (경영공시 사항)
	(제2항) 개별 의료생협의 경영공시에 갈음하여 공정위가 표준화된 자료를 제출받아 통합공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행규칙 제5조의3 (통합공시 서식)
	(제3항) 통합공시를 하기 위한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	-
	(제4항) 그 밖에 경영공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시행령 제10조의4 제2,3항 (경영·통합공시 절차)
위반시 제재 (제88조제3항)	(제5호) 경영공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6호)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영공시 사항 <시행령>

개정 생협법에서는 의료생협 등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의료생협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관과 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활동 상황 및 사업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생협의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①의료생협 및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연혁 및 조합원 현황 등의 기본정보, ②시·도지사의 감독사항과 조치결과 및 ③생협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② 통합공시 서식 <시행규칙>

개정 생협법은 의료생협 등의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공정위가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통합공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①사업결산 보고서, ②총회·이사회 활동 상황 및 ③시행령에서 규정한 기본정보, 시·도지사의 감독사항과 조치결과 및 생협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통합공시 서식*을 마련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하였다.

*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4호의4 참조

③ 경영·통합공시 절차 <시행령>

개정 생협법에서는 의료생협 등의 경영공시 또는 공정위의 통합공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의료생협이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생협 등의 누리집에, 통합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④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시행령>

개정 생협법에서는 의료생협 등이 ❶경영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❷통합공시를 위한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경영공시 의무 관련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신설하였다.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이상 100만원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료생협 등의 경영공시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료생협 등의 재무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소비자가 스스로 건전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의료생협 등이 새롭게 도입된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생협연합회에 개정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개정 생협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2. 개정 생협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배문성 (044-200-4430)
		담당자	사무관	송진규 (044-200-4432)
			사무관	변수민 (044-200-4433)

현행	개정안
제8조의5(서면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조합원 확인절차) 조합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는 등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제8조의5(서면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조합원 확인절차) ----- -- 조합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 ----- ----- ----- ----- -----.
<신 설>	제10조의4(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①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조합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이 포함된 사업보고서 2. 보건·의료조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보건·의료조합의 명칭, 설립 목적, 연혁, 업종, 업태, 주

소 및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나. 보건·의료조합의 조직, 임
직원 및 조합원에 관한 사항
다. 보건·의료조합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라. 보건·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의료조합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
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
항

3. 보건·의료조합에 대한 법 제8
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
및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

② 보건·의료조합은 법 제48조의
2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보건·의료조합 또는 연합회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8조의
2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 라.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생략)
<u><신설></u>				마. 법 제44조(법 제64조 및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2	50	100
마. ~ 바.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바. ~ 사.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생략)
<u><신설></u>				아. 법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8조 제3항 제5호	50	100
<u><신설></u>				자.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8조 제3항 제6호	50	100
사. ~ 자.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차. ~ 타.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생략)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조의3(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영 제10조의4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업결산 보고서 2.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보고서 3.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기본정보 · 감독사항 · 사업보고서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사업결산 보고서

(앞 쪽)

회계연도 : 년도			
조직 개요	조 합 명		설립 연월일
	조 합 원 수		출자금
	명		원

① 재무상태표			
자 산		부 채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자산		부채	
I. 유동자산		I. 유동부채	
(1) 당좌자산		- 단기차입금	
- 현금		- 예수금	
- 보통예금		- 미지급금	
- 미수금		- 선수금	
- 선급금		-	
-		II. 비유동부채	
(2) 재고자산		- 장기차입금	
- 제품		- 퇴직급여충당부채	
- 원재료		-	
-		부 채 총 계	
II. 비유동자산		자본	
(1) 투자자산		I. 자본금	
- 장기성예적금		- 조합원출자금	
-		II. 자본잉여금	
(2) 유형자산		III. 자본조정	
- 비품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시설장치		V.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 차량운반기구		- 법정적립금	
-		- 임의적립금	
(3) 무형자산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특허권		-	
-			
(4) 기타비유동자산		(당기순손익)	
- 임차보증금		당기 : 원	
-		전기 : 원	
		자 본 총 계	
자 산 총 계		부 채 및 자 본 총 계	

작성방법	
1. 출자금: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 [탈퇴(제명)한 조합원에게 환급한 출자금을 제외합니다.]	
2. 자산 = 부채 + 자본	
3. 예시된 세부항목("-")은 조합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손익계산서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I. 매출액		VI. 영업외수익	
- 000사업 수입		- 이자수익	
- 000 수입		- 지원금	
-		- 후원금	
II. 매출원가		- 회비	
- 판매원가		- 잡이익	
- 서비스원가		- 보조금	
-		-	
III. 매출총손익		VII. 영업외비용	
IV. 판매비와관리비		- 이자비용	
- 임직원급여		- 기부금	
- 퇴직급여		- 잡손실	
- 상여금		-	
- 복리후생비		VIII. 법인세차감전손익	
- 여비교통비		IX. 법인세등	
- 통신비		X. 당기순손익	
- 보험료			
- 감가상각비			
- 차량유지비			
- 회의비			
- 사무용품비			
- 소모품비			
- 업무추진비			
- 교육훈련비			
-			
V. 영업손익			

작성방법

1. 매출총손익 = 매출액 - 매출원가
2. 영업손익 =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관리비
3. 법인세차감전손익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4. 당기순손익 = 법인세차감전손익 - 법인세등
5. 예시된 세부항목("-")은 조합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보고서

조직 개요	조합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출자금	백만원

[총회]

일시	장소	조합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대의원총회]

일시	장소	대의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이사회]

일시	장소	임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기타]

일시	장소	대상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기본정보 · 감독사항 · 사업보고서

(앞 쪽)

조직 개요	조합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설 의료기관명		연락처		
	주소	주사무소			
		제1 의료기관			
		제2 의료기관			
제3 의료기관					
홈페이지 주소		출자금			
		백만원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설립 목적	
-------	--

의사결정 기구	[] 조합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	---

조직도	
-----	--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뒤 쪽)

조합원 현황		명
직원 현황		명
시·도지사의 감독사항 및 그 조치 결과	연월일	주요 내용
해당 연도 사업계획		
해당 연도 사업결과		

작성방법

시·도지사의 감독사항 및 그 조치결과란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의 내용 및 그 조치결과를 적습니다.